

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전자출입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등기신청 접수담당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으로 자격자대리인 또는 등기소출입사무원을 확인할 때에는 먼저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 상의 얼굴 사진 주위의 원이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는 실행상태를 확인한 다음 이를 바코드리더기에 인식시킨 후 얼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(안 제 4조제3항)

3.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**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
일부개정예규안**

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바코드리더기를 이용하여야 한다”를 “먼저 자격확인증 또는 전자출입증 상의 얼굴 사진 주위의 원이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는 실행상태를 확인한 다음 이를 바코드리더기에 인식시킨 후 얼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본인여부 등의 확인)</p> <p>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격확인 증 또는 전자출입증으로 변호사 나 법무사 또는 출입사무원을 확 인할 때에는 <u>바코드리더기를 이 용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본인여부 등의 확인)</p> <p>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격확인 증 또는 전자출입증으로 변호사 나 법무사 또는 출입사무원을 확 인할 때에는 <u>먼저 자격확인증 또 는 전자출입증 상의 얼굴 사진 주위의 원이 시계방향으로 회전 되는 실행상태를 확인한 다음 이 를 바코드리더기에 인식시킨 후 얼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</u></p>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1394